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98
----------	------

제출연월일 2025. 11. 11.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양육지원의 내용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용품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 출산축하용품: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

나. 출산양육지원사업 내용 신설(안 제3조)

- 출산양육지원사업: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다. 조문 신설에 따라 기존 조문 번호 및 제목 변경(안 제3조의2)

(당초)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변경) 제3조의2(지원대상)

라. 출산양육지원 내용 확대에 따른 조문 내용 변경

(안 제3조의2, 제4조제1항 및 제3항)

(당초) 출산양육지원금

(변경) 출산양육지원사업

10 (제278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안 제5조제2항)

(당초) “영아”라 함은, “출산양육지원금”이라 함은, 첨부하여야

(변경) “영아”란, “출산양육지원금”이란, 첨부해야

바. 별지 제1호서식 변경 및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신설

- 별지 제1호서식(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중 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에 출산축하용품 추가
- 별지 제4호서식: 출산축하용품 신청대장(동보관용)
- 별지 제5호서식: 출산축하용품 지급대장(구청용)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2026년 당초예산 반영(구 90,000천원)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38515호, 2025. 9. 22.)

라. 입법예고: 2025. 9. 15. ~ 10. 10.(25일간)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영아”라 함은”을 ““영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출산양육지원금”이라 함은”을 ““출산양육지원금”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조) 제1항 중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양육지원사업”으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출산양육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양육지원금
2. 출산축하용품

제3조의2(중전의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양육지원금”을 각각 “출산양육지원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접수되면 출산양육지원금”을 “접수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청 시”를 “신청서에는”으로,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후 지원금”을 “후”로, “신청인의 계좌로”를 “신청인에게”로 한다.

12 (제278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제7조제1항 중 “지원대상”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을 “지원받은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양육지원금을”을 “제1항에 따라”로, “지원금 지급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급대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신청대장 및 출산축하용품 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구청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장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제5호서식)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중 “출산지원금”을 “출산양육지원금”으로 하고, 출산축하용품란을 신설하며,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출산축하용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지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영아</u>”라 함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p> <p>2. (생략)</p> <p>3. “<u>출산양육지원금</u>”이라 함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p> <p><u><신 설></u></p> <p>4. 5. (생략)</p> <p><u><신 설></u></p> <p>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u>출산양육지원금</u>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산 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영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u>영아</u>”란 ----- -----.</p> <p>2. (현행과 같음)</p> <p>3. “<u>출산양육지원금</u>”이란 ----- ----- -----.</p> <p>4. “<u>출산축하용품</u>”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p> <p>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제3조(출산양육지원사업) <u>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u>출산양육지원금</u></p> <p>2. <u>출산축하용품</u></p> <p>제3조의2(지원대상) ① <u>출산양육지원사업</u> ----- ----- ----- ----- -----.</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원기준) ① <u>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u>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이부터 <u>출산양육지원금</u>을 지원한다.(입양자녀 포함)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p> <p>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u>출산양육지원금</u>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 신고서가 <u>접수되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u>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u>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청 시</u>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4조(지원기준) ① <u>구청장</u>----- ----- ----- ----- <u>출산양육지원사업</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출산양육지원사업</u>----- ----- -----.</p> <p>제5조(지원신청) ① ----- ----- <u>접수되면</u> ----- ----- ----- ----- -----.</p> <p>② ----- <u>신청서에는</u> ----- ----- ----- <u>첨부해야 한다.</u></p>
<p>1. 2. (생략)</p> <p>③ (생략)</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p> <p>1. (생략)</p> <p>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p> <p>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u>신청인의 계좌로</u> 지급해야 한다.</p> <p>④ (생략)</p> <p>제7조(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u>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u>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p> <p>② <u>출산양육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u> 지원금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p>	<p>제6조(지원절차)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3조의2</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후 ----- ----- ----- ----- - <u>신청인에게</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환수 조치) ① ----- 이 <u>조례에 따른 지원대상</u>----- -- <u>지원받은</u>----- ----- -----.</p> <p>② <u>제1항에 따라</u> ----- --- <u>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급대장</u>---</p>
<p>제8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u>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대장</u>, 구청장은 <u>별지 제3호</u></p>	<p>제8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u>출산양육지원금 신청대장 및 출산축하용품 신청대장(별지 제2호서</u></p>

현행	개정안
<p>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p>	<p>식 및 제4호서식), 구청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장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제5호서식)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p>

근거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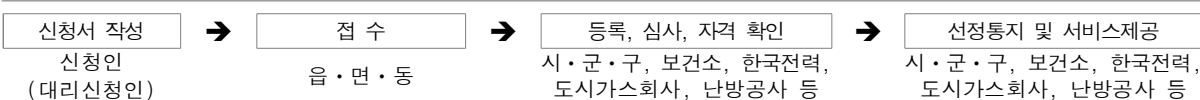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시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출산양육지원금	[] 첫째 자녀(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셋째 이상(이름 :)			
	출산축하용품	(신청인:) 휴대전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중구	출생아의 (부/모) 장애종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예 [] 아니오	
	아동수당		[] 아동수당		2. 복수국적 여부 : [] 예 [] 아니오	
	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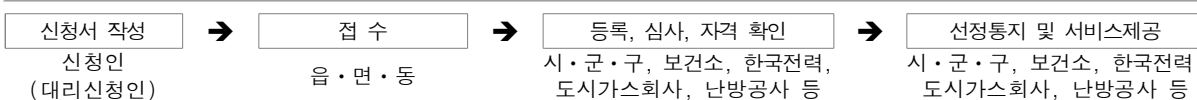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시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가구: 2026. 1. 1. 출생아의 부모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소요예산: 90,000천원(900명×100천원)
 - 지원대상: 2026년 예상 출생아 수 900명(※2024년 854명 출생아 수)
 - 지원내용: 출산축하용품 구입 바우처 포인트(100천원 상당)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지출	출산축하용품		90	91	92	93	94	460
	소계(a)		90	91	92	93	94	460
수입	출산축하용품		-	-	-	-	-	-
	소계(b)		-	-	-	-	-	-
총비용(a-b)			90	91	92	93	94	46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국비	보조금		-	-	-	-	-	-
	특별보조금		-	-	-	-	-	-
시비			-	-	-	-	-	-
기금			-	-	-	-	-	-
구비			90	91	92	93	94	460
민간자본			-	-	-	-	-	-
합계			90	91	92	93	94	460

1. 부대의견: 국·시비 보조금 교부 및 비수익성 사업으로, 자체수입 없음
2. 협의사항: 2026년 당초예산 편성 협의 필요(기획예산실)
3. 작성자: 가족복지과 사회복지서기 김종범(052-290-4904)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시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구비		90	91	92	93	94	460
공공단체		-	-	-	-	-	-
민간자금		-	-	-	-	-	-
합계		90	91	92	93	94	460

※ 재원배분 : 구비 100%

2. 재원조달방안: 자체재원 확보
3. 부대의견: 해당사항 없음
4. 협의사항: 예산 편성 관련 예산계 협의(2026년 당초예산 편성)
5. 작성자: 가족복지과 사회복지서기 김종범(052-290-4904)